

근 거 과 세

- 왜 추계과세 (推計課稅) 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 -

1. 머 릿 말

오늘날의 민주복지국가는 나라를 방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외에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임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대부분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세금은 모든 국민이 각기 자기의 능력에 맞게 공평히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곧 납세자 스스로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의거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의 근거가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이른바 인정과세라고 하는 추계과세를 하게 되며 추계과세는 세무행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왜 추계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와 추계과세의 방법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추계과세를 추방하고 기장에 의한 성실한 신고납세를 안내하고자 엮은 것이다.

2. 나라살림과 세입

나라살림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세입은

- 국민이 내는 세금인 조세수입
- 담배 및 인삼제품 등의 판매이익인 전매익금
- 세금이외의 벌금, 변상금,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에 따른 차관수입
-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조세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1986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수입중 조세는 12조2천135억원으로 총세입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3.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중 일반국민과 가장 관계가 밀접하고 추계과세의 문제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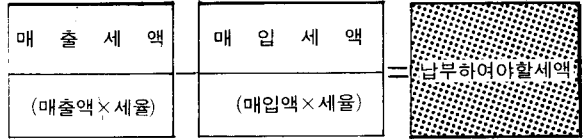
면 세금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부가가치세

어떤 재화이든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는 원료의 생산, 원료의 가공, 제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 등 생산 및 유통의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여러 단계마다 부가되는 가치의 증식분을 부가가치라 하며,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시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일정기간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매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정확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할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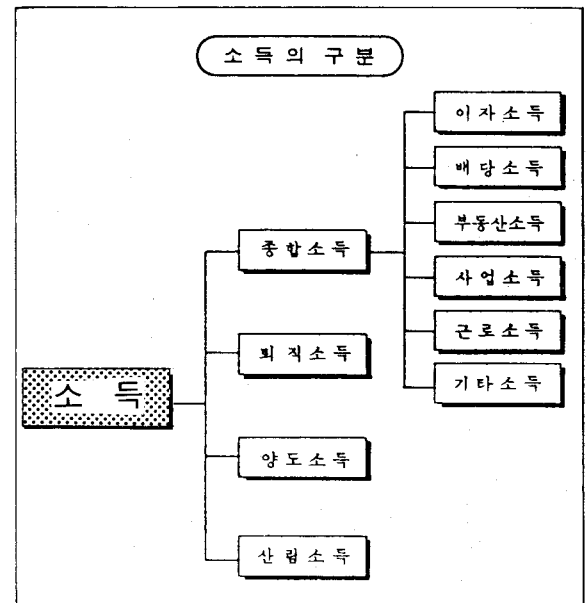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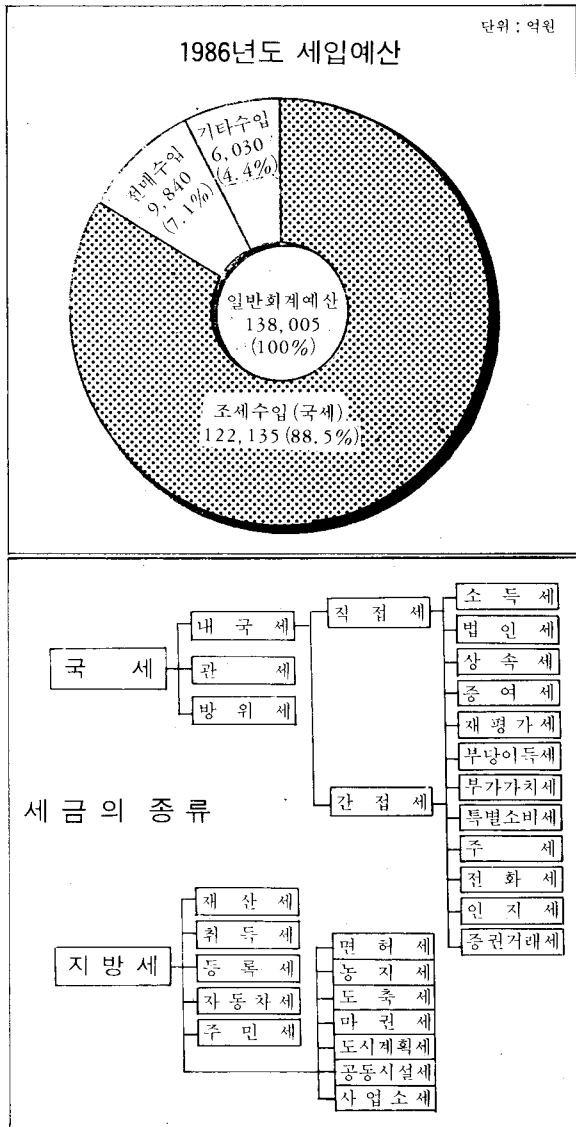
○ 소 득 세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민이 내는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제로서 개인별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 소득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계 산 예

- 총수입금액 × 소득표준율 = 소득금액
(1억원) (9.0%) (9,000천원)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9,000천원) (1,440천원) (7,560천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7,560천원) (15%) (300천원) (834천원)
- 산출세액 × 10% = 무기장가산세
(834천원) (83.4천원)
- 산출세액 + 가산세 = 결정세액
(834천원) (83.4천원) (917.4천원)

기장사업자에 대한 혜택

- 간이기장이나 일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 결손인정 (3년간 이월결손금 인정)
- 축산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달라짐
- 소득세 서면신고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 (85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소득표준율 대비 45%이상이면 신고대로 인정하였음)

소득세 세부담비교 분석표

사 례

- 우측상단 “소득세 추계과세 계산예”의 사례와 같음.

무의 발생과 결재에 있어 영수증을 주고받고 이

계 산 예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추 계(1)	서면신고(2)	영세기장자서면신고(3)	비 고
전 제 사 항		• 85년 양계업자의 전국 평균 서면신고율 기준 • 세무사조정 필요	• 85년 서면신고기준을 기준 율 신 • 자기조정	• 86년 서면신고기준을 현재 미정
외 형				
소득표준율 또는 서면신고기준율	100,000 9.0%	100,000 6.0%	100,000 6.3%	
소득금액	9,000	6,000	6,300	
소득공제	1,440	1,440	1,440	
과세표준	7,560	4,560	4,860	
세 율	15%	10%	12%	
산 출 세 액	834	370	427	
가 산 세	83.4	-	-	
기장세액공제	-	△37	△42.7	
세 무 사 보 수	-	170	-	
결 정 세 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917.4	503	384.3	(1) - (2) 414.4천원 더 부담 (1) - (3) 533.1천원 더 부담

한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거래에 따른 기장관습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의 복잡한 경제생활에서 채권·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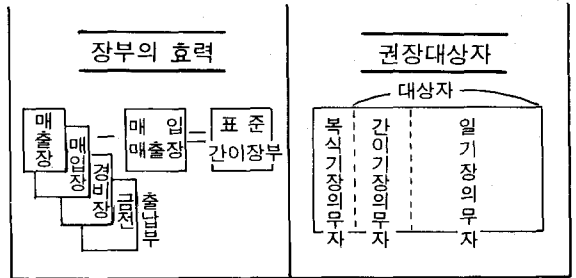
에 의거 체계적으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은 거래의 확실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현대인의 지혜이기도 하다.

무기장사업자의 불이익

- 소득세의 경우
 - 간이기장의무 이상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추가부담
 - 간이기장의무 이하의 자가 기장하면 받을 수 있는 산출세액의 10%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결손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추계과세 : 세부담 불가피
- 부가가치세의 경우
 - 50만원 이하의 벌과금 부담

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실지 조사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표준간이장부 효력 및 사용대상자



7. 기장 지도

기장을 새로 하고자 하여도 기장방법을 모르는 사업자는 세무관서나 위탁기장지도단체에 기장지도를 희망하면 다음과 같이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으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지도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무료로 기장지도를 받을 수 있다.

기장지도의 방법과 범위

기장지도구분	기 장 지 도 자	기 장 지 도 범 위
위탁기장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 공인회계사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성실신고회원조합 등의 기장지도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의 기장방법과 절차 • 세무조정 및 신고서작성 •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 원천징수 등의 관련사무
직접기장지도	• 세무공무원	• 기타 세무관련사항

○표준간이장부의 제정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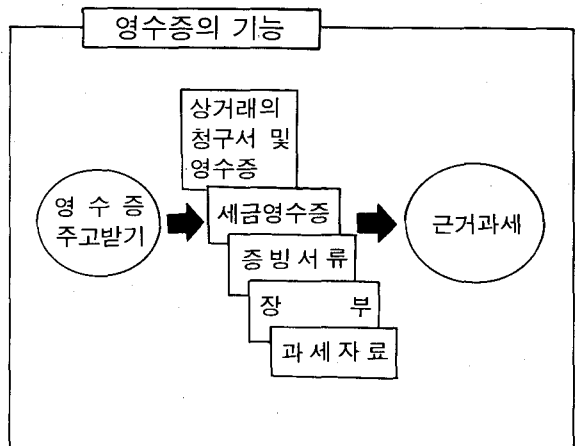
국제정에서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기장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간편한 표준간이장부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간편한 표준간이장부를 기장함으로써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장부를 비치, 기장한 것으로 인정받

8. 영수증 주고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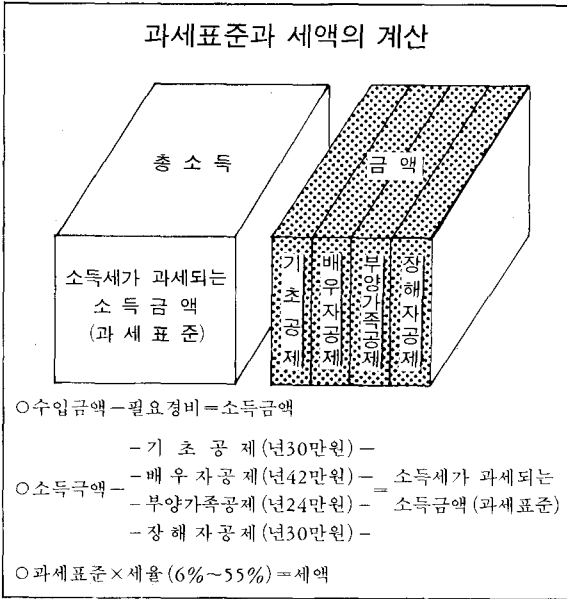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은 장부의 기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영수증이 없으면 장부를 기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추계과세를 배제하고 근거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빙이 되므로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영수증을 꼭 주고받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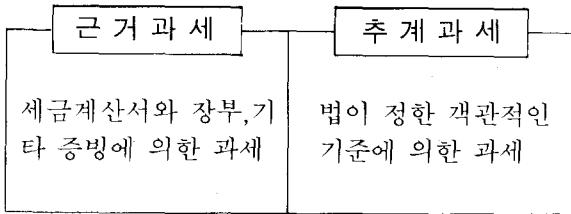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영수증은 상거래의 채권·채무의 발생과 결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으로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는 현대산업사회를 사는 민주시민의 기초 소양이기도 하다.



다음 “표”와 같이 부양가족 공제 등 소득공제를 한 후 나머지 소득에만 과세하게 된다.



4. 과세표준 결정방법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업실적에 따라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사업실적을 알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와 장부, 기타 증빙을 기록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사업자가 장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자나 정부 그 누구도 사업실적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이 때에는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흔히 추계과세를 인정과세라고 하고 있으나, 추계의 방법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추계과세제도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부득이한 것이다.

5. 추계과세 방법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장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장부 등의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게 된다.

○추계과세의 대상

기장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장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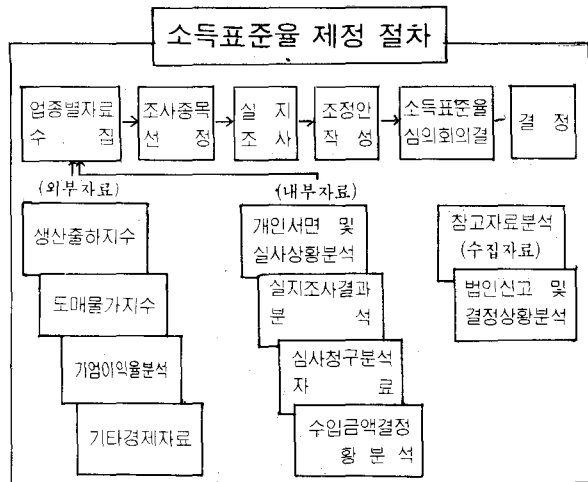
구분	추계방법	법적근거
수입금액의 추계계산	권형에 의한 방법 동일업종, 동일업황의 성실기장자의 수입금액을 기준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동시행령제69조제1항
	생산수율에 의한 방법 원재료 투입량에 세정당국이 업종별로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계산하고 여기서 재고품을 뺀 수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법제114조의2 동시행령제159조제6항
	사업효율에 의한 방법 세정당국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에 의하여 계산함.	
	기타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세정당국이 상황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선정하여 계산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원단위 투입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20px;">비용의 관계비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40px;">상품회전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60px;">매출 총이익율</div>	
소득금액의 추계계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 업종별로 제정된 소득표준율을 총수입금액에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법제120조 동시행령제169조
	권형에 의한 방법 동일업종, 동일업황의 성실기장자의 소득율에 의하여 계산함.	

용이 다소간 불비하다더라도 “가능한 한” 추계과세를 배제하고 기장 등에 근거하여 과세하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거과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계과세를 하게 된다.

법적 근거	추계과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제114조의 2 • 소득세법제120조 제1항 • 동시행령제16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장사업자 •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사업자 • 장부,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업자 • 장부,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식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사업자. • 장부,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사업자.

○ 소득표준율의 제정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은 법에 의거 경제지표 등 각종 참고자료에 의하여 해당업종 중 표본업체를 선정 소득율을 실시조사한 후 학계, 경제계 등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심의회 의결로 결정함으로써 세정당국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있다.



소득표준율심의회 구성	
추천위원	당연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계 대학교수 ○ 학술연구단체 임원 ○ 경제단체임원 ○ 금융기관임원 등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공무원 4명 <p style="text-align: right;">(합계 : 15명)</p>

기장의무 및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			
법적근거	기장의무범	대 상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
소득세법 (제184조)	복식부기의 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억 5천만원 이상자(보관, 대리등은 6천만원 이상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의 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1억 원 이상자(보관, 대리등은 2천5백만원이상자)	•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경비장 및 상품, 제품수불부 • 또는 표준간이장부
	일기장의 무자	기타의 사업자	• 일기장 • 또는 표준간이장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매입·매출장 • 또는 표준간이장부

6. 장부의 기장

우리의 세정에서 추계과세를 추방하고 근거에 의한 실질과세를 하는 것은 합리세정의 구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일로 사업자는 스스로 자기의 사업실적을 장부에 성실히 기장하여야 하며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규모에 따른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기장을 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득세 추계과세 계산예

사 례

- 축산업 양계(산란계)를 경영하는 사업자
- 86년도 총수입금액 1억원
- 5인 가족임
- 다른 소득없음
- 조감법 제37조 소득공제는 계산편의상 제외함

지금까지 왜 추계과세를 하게 되는지와 우리의 납세에서 추계과세를 추방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세청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득이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법에 의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세금을 내는 측과 받는 측 사이에 마찰없는 명랑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영수증 주고받기의 생활화와 기장의 보편화가 그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납세를 하는 모든 국민이 오늘의 민주복지국가에 사는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이해와 협조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9. 세무상담실 이용안내

국세에 관한 상담은 국세청 중앙세무상담실 또는 세무서의 세무상담실을 찾거나 전국 어디에서나 다음 전화번호를 돌리면 언제든지 전화상담할 수 있다.

- 국세청 중앙세무상담실 (02)272-2100
(02)273-2100
(02)274-2100
- 서울지방국세청세무상담실(서울) 720-2100
- 중부지방국세청세무상담실(서울) 470-2100
- 대전지방국세청세무상담실(대전) 22-2100
- 광주지방국세청세무상담실(광주) 362-2100
- 대구지방국세청세무상담실(대구) 46-2100
- 부산지방국세청세무상담실(부산) 43-2100
- 세무서세무상담실(해당세무서국번) 2100

중추, 대추(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육성계전문사육장

삼정농원

농 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폐면 양벌리 612번지

전 화 : 62-4339 (DDD 0347)

※간이연락처 :

퓨리나사료 광주서비스업소 (2-2558)